# 무배당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

## 보험계약의 체결

###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 연5.5% > 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별도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의 운전이라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며, 발진조작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4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위 ⑩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피보험자가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제6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제7조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제8조 (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 제9조 (계약후 알릴의무)

1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등, 이륜차(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하게 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 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 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3과 같습니다.
5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④ 보험가입금액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 1의 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위 1의 ④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위 ①의 ⑤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위 ①의 ⑤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 제11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④ 본 조항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고 법정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12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 제1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5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2조 (보험계약자 대출)에 규정된 보험계약자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위 1. 및 2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15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1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3 제 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제16조 (해지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 + 1%〈연5.5%〉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4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및 제6조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17조 (보험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1 (해약환급금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6조 (계약전 알릴의무)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 (계약후 알릴의무)의 1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별표1 (해약환급금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위 2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9조 (계약후 알릴의무)의 3 또는 4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손해가 위 2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3 및 4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8조 (계약취소권 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 제19조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 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7조 (보험계약의 해지)의 2의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1 (해약환급금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구 분 | 만 기 환 급 금 |
|---|---|
| 자 가 용 |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 영 업 용 | 보험가입금액의 4% 해당액 |

## 제21조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1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9조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및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 + 1%<연5.5%>로 계산된 금액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

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연4.5%>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려드린 경우 만기환급금과 제19조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2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경우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연2.25%>, 1년후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는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발생

### 제22조 (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2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 (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 제24조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5조 (후유장해보험금)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

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위 ①, ②, ③ 및 ④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 제26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25조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제25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25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27조 (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위 ①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예정이율+1%<연5.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제28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29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 제30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25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 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제25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그밖의 사항

### 제32조 (보험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①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 제33조 (계약자배당금)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4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36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

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제3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38조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9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41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무배당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추가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조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4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위 1, 2, 3 및 4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1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 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3조 (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운전중상해추가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4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위 1, 2, 3 및 4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운전중 고도후유장해연금담보 특별약관 (100%, 80%이상후유장해발생)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무배당 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기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아래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고도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자 가 용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평일 운전중 교통사고 |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5%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지급(20회) |
| | 100%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지급(20회) |
| 주말 운전중 교통사고 |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지급(20회) |
| | 100%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40%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지급(20회) |

< 영 업 용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운전중 교통사고 |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5%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지급(20회) |
| | 100%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지급(20회)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3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

보험자의 직업·연령·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위 1, 2 및 3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5 위 1의 고도후유장해연금은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5%>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 1의 주말이라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제2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

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로 입원한 경우라도 임시생활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3 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자동차사고 성형비용담보 특별약관(자가용)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을 성형비용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의 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자동차의 화재,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위 1항에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

해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4 위 3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위 3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7.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위로금담보 특별약관(자가용)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자동차보험에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아래의 ①, ②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30만원이상 보상받은 경우 : 1사고당 10만원
②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사고당 10만원

2 위1의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① 아파트 단지내
② 지정주차장(공설, 사설을 불문함)
③ 기타 주택가에 주차구역선이 설정되어 있거나 사회상규(社會常規) 내지 관습상 인정되는 주차구역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보유불명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

위에서 『보유불명 사고』라 함은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사고를 말합니다.

② 도로주행중(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제외) 및 도로변 불법주차중 발생한 사고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8.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상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1사고마다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일당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

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9.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Ⅰ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 각각에 대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③ 자가용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0.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Ⅱ (자가용)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3】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6주), 70일(10주) 또는 140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진단일의 경우 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 42일(6주)이상<br>70일(10주)미만 진단시 | 70일(10주)이상<br>140일(20주)미만 진단시 | 140일(20주)이상<br>진단시 |
|---|---|---|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1. 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1사고 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2.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담보 특별약관(자가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 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Ⅰ(책임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의 보상이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생해당일에 3년동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은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5%>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제3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제2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②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③ 기타 관련 증명서류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①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3. 벌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 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 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4. 렌트카지원비용담보 특별약관(자가용)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 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2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에 차량가액의 50%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렌트카지원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50%이상의 손해라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또는 망가지게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차량지급결정액을 수리비용으로 합니다.
3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을 말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5. 면허정지·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 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정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

**제3조 (면허정지위로금)**
피보험자가 위 제1조 (보상하는 손해)의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일시정지 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제4조 (면허취소위로금)에서 정한 면허취소위로금의 1%해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면허취소위로금)**
피보험자가 위 제1조 (보상하는 손해)의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제4조 (면허취소위로금)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합니다.

**제6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6. 탑승중가족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또는 승·하차 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위 1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4 위 1탑승중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차 제외)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5 위 1의 승·하차하던 중에는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승·하차는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1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훙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함)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훙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2 위 1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위 1에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4 위 1, 2, 3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4조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4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위 1, 2, 3 및 4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

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5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7. 탑승중가족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또는 승하차 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1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1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5 위 1탑승중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차 제외)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직

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6 위 1의 승·하차하던 중에는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승·하차는 제외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1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함)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2 위 1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위 1에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4 위 1, 2, 3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8. 강력범죄위로금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 (身體)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강력범죄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형법 제 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② 형법 제 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③ 형법 제 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④ 형법 제 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2 위 1의 ①의 살인, ②의 상해 및 폭행, ⑤의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폭처법』제 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②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③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발생한 손해
④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⑤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 제3조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② 의사진단서

###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9. 자녀 탑승 및 비탑승중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

###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하 합니다)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위 1의 자녀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주민등록상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중인 만20세 미만의 자녀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만20세 미만의 자녀
3 위 2의 피보험자 본인과 자녀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2조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1사고마다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함)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함)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1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1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5 위 1탑승중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차 제외)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6 위 1 승·하차하던 중에는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승·하차는 제외합니다.

##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 하고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1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훙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훙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자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의 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0. 계약순연부활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1 이 특별약관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늦추어 (이하『순연』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위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② 과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한 계약
③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계약
④ 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
(계약일의 순연에 따른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약 등)
⑤ 세제와 관련된 계약으로 납입일, 납입기간등의 변경으로 세제혜택 대상계약에서 제외 되는 계약

**제2조 (계약의 부활)**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한 기간만큼 순연됩니다. 단, 무배당장기상해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은 순연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부활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부치일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치가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부활 후 보험료
위 제2조 (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②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약환급금과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1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16조 (해지된 계약의 부활)의 2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 위 1의 경우에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제2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의 보험기간 첫날은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제 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로 합니다.

**제3조 (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22.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년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 (사고카드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장기상해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23.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계약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합니다.

**제2조(세금우대 요건)**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계약 청약시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일부터 해지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하「계약유지기간」이라 합니다) 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유지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세금우대등록)**
제2조에 의해 계약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우리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제4조(가입한도)**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포함하여 1인당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만60세(여자는 만55세) 이상인 자 와 장애인(미성년자 포함) 및 상이자인 경우에는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 |
|---|
| 장애인 및 상이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된 자 |

②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 환급금등은 1인당 가입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은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합계액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위 ①항의 가입한도를 적용합니다.

**제5조(가입한도 산정방법)**

① 일시납계약의 경우에는 일시납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② 연납 및 분할납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납입할 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제6조(한도변경)**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가입한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세금우대 처리)**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제8조 (표시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표지 등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9조(특별중도 해지)**

이 특별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유지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계약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제10조(세금우대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별 세금우대종합저축 자료를 세금우대저축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수익자포함)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수익자포함)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상품의 보험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1 (해약환급금 명세표)】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

해당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 급 율 |
|---|---|
| **1. 눈(眼)의 장해** |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6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4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6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20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15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2. 귀(耳)의 장해**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 20 |
| 4) 한 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 5 |
|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3. 코(鼻)의 장해** | |
|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5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 급 율 |
|---|---|
| **6. 등뼈의 장해** | |
|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 20 |
|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20 |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15 |
|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10 |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 |
|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 40 |
|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 40 |
|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때 | 30 |
|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때 | 10 |
| 16)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 34 |
| 17)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 20 |
| 18) 한 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 7 |

| 후 유 장 해 의 분 류 | 지급율 |
|---|---|
|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 40 |
|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때 | 30 |
|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때 | 10 |
| 16)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 34 |
| 17)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 20 |
| 18) 한 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 7 |
| **8. 손가락의 장해** | |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100 |
|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2 |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손가락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때 | 20 |
|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8 |
|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5 |
| **9. 발(가락)의 장해** |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2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 5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 3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 급 율 |
|---|---|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 |
|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100 |
|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75 |
|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50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25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때 | 10 |
|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 42 |
|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 34 |
|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6 |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
|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 100 |
|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 75 |
|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 50<br>25 |
|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 10 |
|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 용 어 풀 이 >

### 1.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⅓이상 결손된 경우

###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⅓이상 파절된 경우

###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 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 1) 얼굴
  -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 함몰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 1) 얼굴
  - ① 손바닥 ¼크기 이상의 추상
  -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 2) 머리

**①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② 두개골의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추상

###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 1) 고도의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0 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 2) 중등도의 기형
  -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0 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 3) 경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 변형된 경우
- 4) 고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이하로 제한 된 때
- 5) 중등도의 운동장해
  -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이하로 제한된 때
  -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 1, 2 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¼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4) 경4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 절이 있는 경우

## 6.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 7.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 1, 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½이하가 되었을 때

## 8.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을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½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제57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 19조(앞지르기 방법) 제 1항·제 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56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 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24조(보행자 보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 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제 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 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 41조(주취중 운전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 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 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